

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539
----------	-----

2015년 6월 23일
도시안전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5년 6월 12일, 서울특별시장
- 나. 회부일자 : 2015년 6월 17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61회 정례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
(2015년 6월 23일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김학진 물순환기획관)

가. 제안이유

건강한 물순환 체계 개선을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자원으로 우수, 하수처리수 등 버려지는 물의 재이용을 확대하고자 중수도 설치 및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중수도 설치·운영 의무 대상 규정, 권장 대상의 시설규모 변경 및 대상을 확대 함(안 제6조제1항, 제2항)
-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에 따른 재이용수 권장사용 대상을 규정함

(안 제7조의2)

3. 검토보고요지(수석전문위원 이상근)

■ 개요

-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('13.9, 환경부승인)에 따른 물 재이용 목표 달성을 위해 중수도 및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사용 확대가 필요함에 따라 빗물, 하수처리수 등에 대한 중수도 설치·관리 및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재이용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.

[표 1] 물 재이용 시설의 정의 및 사용용도

구분	정의 및 법적근거	사용용도
빗물이용 시설	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한 시설을 말한다. (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)	생활용수, 공업용수, 농업용수, 조경용수, 하천유지용수 등의 용도로 이용할수 있으나, 서울시의 경우 대부분 수목, 텃밭 등 조경용수, 청소용수, 화장실용수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
중수도	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. (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)	대규모 업무용, 상업용시설에 설치되고 있으며, 사용용도는 대부분 화장실 용수로 사용하며, 도로, 건물 세척 및 살수용, 조경용수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
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	“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”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 시설, 공급관로를 말한다. (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)	일례로, 마곡도시개발구역 내 산업(연구)용, 업무용, 상업용 시설의 화장실 용수, 조경용수, 청소용수 등으로 사용, 일부 도로물청소용으로 사용

■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

1)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관련(안 제3조)

- 안 제3조제2항은 현행 ‘종말처리시설’이란 용어를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의하고 있는 ‘폐수종말처리시설’이란 용어와 일치시키려는 것으로, 조례와 관련법 간의 용어 불일치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임.
- 다음으로, 안 제3조제3항은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될 대상 중 ‘그 밖에 필요한 사항’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9호를 삭제하려는 것으로,

이는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‘영’) 제3조제1항1)의 제1호부터 제8호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같은 항 제9호의 조례위임 규정에 대해 현행 조례 제9호가 또다시 시장이 판단하도록 재차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해되며,

영 제3조제1항 제1호부터 제8호와 별개로 조례로 추가 규정하

1) 영 제3조(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등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·군수(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. 이하 같다)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(이하 “물 재이용 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관할 지역 내 물 수급(需給) 현황 및 물 이용 전망
2. 물 재이용시설 설치·운영 현황
3.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
4.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
5.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
6.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7.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
8.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
9. 그 밖에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조례로 규정한 사항

여 관리계획 수립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이 없다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입각하여 현행 제9호를 삭제하는 것은 무방하다 사료됨.

2) 중수도 설치·운영 의무대상 신설 관련(안 제6조제1항)

- 안 제6조는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법’) 제9조(중수도의 설치·관리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7호2)의 조례위임 규정에 따라 중수도 설치·운영에 대한 의무대상 시설물을 확대하는 한편, 현행 권장대상을 현실성 있게 개편하려는 것임.

[표 2] 안 제6조 개정골자

중수도 설치·운영	현 행	개 정 안
의무대상	- 조례 별도규정 없음 (법 제9조 적용)	(영 제11조제2항제7호에 따른 조례 확대신설) - 법 제9조제2항의 시행자(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기업, 지방공기업)가 시행하는 연면적 6만㎡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, 도매시장, 의료시설, 교육원, 연구소, 도서관 등
권장대상	- 연면적 8,000㎡ 이상인 공공건물 - 물 사용량 400㎡/일 이상인 공동주택	(일반용 중수도 용량 150㎡/일 이상 기준 적용) - 연면적 30,000㎡이상인 숙박시설 - 연면적 50,000㎡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의료시설, 교육연구시설, 업무시설, 위락시설, 물류터미널, 방송국, 전신전화국 등

2) 영 제11조(중수도의 설치 대상·관리) ②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물”이란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.

1.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
2. 「물류정책 기본법」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
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
4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
5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가목에 따른 교정시설
6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4호가목에 따른 방송국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전신전화국
7. 그 밖에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

- 현행 조례 제6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법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(이하 ‘공공기관’)가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 $8,000m^2$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(증·개·재축 포함, 이하 같음)하는 경우와, 1일 물 사용량이 $400m^3$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·운영을 단순히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, 의무대상에 대해서는 법 제9조(중수도 설치·관리)의 법정 의무대상 외에 별도 규정은 없음.
- 이에 본 개정안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7호의 ‘그 밖에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’ 규정에 의거, 법 제9조제2항의 공공기관이 연면적 연면적 $60,000m^2$ 이상인 시설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대해 안 제6조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를 중수도 설치 의무대상 시설로 추가([표 2] 참조)하려는 것으로,
- 서울시 공공시설물 중 [표 3]을 중수도 설치 법정 의무대상에 추가할 경우 물의 재이용 촉진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, 따라서 조례 시행 이후에 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지속적인 확대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임.

3) 중수도 설치·관리 권장대상의 현실화 관련(안 제6조제2항)

- 현행 조례 제6조는 공공기관이 연면적 $8,000m^2$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(증축·개축·재축 포함)하는 경우와 1일 물사용량 $400m^3$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시장이 중수도 설치·운영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³⁾하고 있으나,

- 서울시의 ‘2013년 물 재이용 관리계획’에서 일반용 중수도를 기준으로 할 때 경제성을 갖는 중수도 합리적 규모가 1일 150m³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결론⁴⁾에 도달하였고,
-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1일 물 사용량이 1,500m³(10% 재이용 기준) 이상이어야 하며 건축물 연면적이 숙박시설의 경우 30,000m² 이상, 업무시설의 경우 50,000m² 이상 되어야 한다는 점에 근거하여,
- 현실성이 결여된 현행 제6조를 폐지하는 대신에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이 정하는 일부 시설물에 대해 경제성 있는 연면적 이상의 경우만 권장대상으로 정하는 안 제6조제2항을 새로이 신설 ([표 2] 참조)하려는 것으로, 그동안 현행 중수도 설치 권장규정이 경제성 문제에 부딪쳐 실효적이지 못했던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한 개편이라 여겨짐.

4)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에 따른 재이용 관련(안 제7조의2)

- 안 제7조의2는 법 제10조제1항⁵⁾에 근거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지역(제12조) 내에서 법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자(공공기관)가 시설물을 신축하는 경우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건

3) 근거자료: 서울연구원(2009), ‘물재생 및 관리산업의 활성화 방안연구’

4) 숙박시설 : 30,000m²(연면적)×0.05(사용수량)=1,500m³(10% 재이용)→ 용량 150m³

업무시설 : 50,000m²(연면적)×0.03(사용수량)=1,500m³(10% 재이용)→ 용량 150m³

5) 제10조(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·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) ① 「하수도법」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(이하 “공공하수도관리청”이라 한다)은 하·폐수처리수 재처리수(하수처리수를 처리한 것만 해당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. 다만, 하수처리수가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.

축 연면적 5,000 m^2 이상 또는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, 시장으로 하여금 인·허가 등 협의 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 권장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,

- 서울시는 현재 서남물재생센터 내에 하수처리수 재처리시설(2만톤/일)을 설치하고 마곡도시개발구역 내 재처리수 공급관로(연장길이 32km)를 부설하여 산업용, 업무용, 상업용 시설에 화장실용수, 조경용수, 청소용수 등으로 2016.7월부터 공급 예정에 있는데,
- 그동안 재처리수 사용대상 시설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수요처 확보 및 사용자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던 바, 본 조 신설을 통해 사용자 편익이 발생하는 일정규모 이상 시설에 대해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이용을 촉진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어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짐.

[표 3] 마곡지구내 재생수 공급사업 개요

위 치	강서구 마곡동 일원(서남물재생센터 및 마곡도시개발구역)
사업규모	- 재처리시설 : 2만톤/일(1단계 : 3천톤/일, 2단계 : 15천톤/일, 3단계 : 20천톤/일) - 재처리수 공급관로 : 연장길이 32km(D80~D600mm)
사업기간	2009.12 ~ 2016.06
총사업비	227억원

5) 기타 개정사항

- 기타 개정사항은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해당없음

7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”을 “시행령 및 시행규칙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종말처리시설”을 “폐수종말처리시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9호를 삭제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대해”를 “대해 「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」 제21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시장은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물을 신축(증축·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조에서 는 같다)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중수도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
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7호가목에 따른 도매시장
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

4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, 같은 호
마목에 따른 연구소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도서관

② 시장은 법 제9조 및 제1항에 따른 중수도 설치·운영 대상을 제
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하는 자에게
중수도 설치·운영을 권장하여야 한다.

1.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
표 1 제15에 따른 숙박시설

2.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
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

3.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
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

4.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
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

5.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
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

6.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
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

7.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
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

8.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
표 1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

9.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
표 1 제18호다목에 따른 물류터미널

10.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「건축법 시행령」
별표 1 제24호가목에 따른 방송국,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전신전화국

제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중수도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(변경)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에 따른 재이용)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, 건축 인가·허가 등 협의 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.

1. 법 제9조제2항에 해당 하는 자가 시설물을 신축하는 경우
2. 법 제9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건축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첨부”를 “붙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서울시”를 “서울특별시”로 한다.

제14조제3호 중 “파손개소를”을 “파손을”로 한다.

제16조 단서 중 “대행 업자”를 “대행자”로 한다.

제17조제1항 본문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수선”을 “수리”로 한다.

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그 공사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수요자”를 “공사에 실제로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”로 한다.

제19조제4항 중 “따라”를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1항제2호 중 “손괴”를 각각 “파손”으로, “손괴예방”을 “파손 예방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“상당”을 “상응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도로경비”를 “도로결빙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수선과”를 “수리와”로, “손괴”를 “파손”으로, “호의”를 “호를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손괴”를 “파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제3호 본문 중 “「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조례」”를 “「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」”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“「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조례」”를 “「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」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며,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경우 “수도공사”는 “급수공사”로 “수도시설”은 “재처리시설”로 본다.

제21조제1항 중 “대하여”를 “대해서”로 한다.

제25조제3항제3호 중 “야기할”을 “일으킬”로 한다.

제26조제2항 중 “구경별기본요금”을 “구경별 기본요금”으로, “절사한다”를 “버림한다”로 한다.

제27조제1항 중 “요금은”을 “요금은 법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경우”를 “경우에는”으로 한다.

제29조제2항 중 “사용공차”를 “사용오차”로, “그 월분의 급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”을 “해당 월의 급수량을 바로 고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해당 월의”로, “추징”을 “추가징수”로 한다.

제30조제2항 단서 중 “납기률”을 “납부기한을”로 한다.

제31조제1항 중 “전자고지(이메일) 및 휴대폰”을 “전자고지(전자 우편) 및 휴대전화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그 달분”을 “해당 월의”로 한다.

제33조제1항 전단 중 “요금을 납부 기한”을 “요금 납부기한”으로, “연체금은”을 “연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기한 내에”를 “기한까지”로 한다.

제35조 단서 중 “대하여”를 “대해서”로 한다.

제37조의 제목 “(하, 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사용자 등의 신고의무)”를 “(하, 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사용자 등의 급수 변경, 누수 등 신고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손괴자”를 “파손자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개시하거나”를 “시작하거나”로 한다.

제38조의 제목 “(하, 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계량기의 훼손 또는 망실 등에 대한 책임)”을 “(하, 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계량기의 훼손 또는 잃어버림 등에 대한 책임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“망실하였”을 “잃어버렸”으로 한다.

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에 대하여”를 “자에게”로 한다.

제40조제1항 본문 중 “추징”을 “추가징수”로 한다.

제43조제2항 중 “물 재이용시설”을 “시장은 물 재이용시설”로 한다.

제45조제1항제3호 중 “시행규칙”을 “법 시행규칙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제6조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 허가를 받는 것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에 관한 법률」과 같은 법 시행 령,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시행령 및 시</u> <u>행규칙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3조(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 립 등) ① (생략)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 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 고, 「수도법」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, 「하수도 법」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「수질 및 수생태 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에 따른 <u>종말처리시설</u> 기본계획 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 ③ 제2항에 따른 물 재이용 관 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~ 8. (생략)</p>	<p>제3조(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 립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폐수종말처리시설</u> --- -----. ③ ----- ----- -----. 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

9. 그 밖에 물의 재이용과 관련
하여 필요한 사항

④ (생략)

제4조(물 재이용 정책에 관한 심의·자문) 물 재이용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물순환 시민위원회의 심의·자문에 따른다. < 개정 2014.1.9 >

1. ~ 5. (생략)

제6조(중수도의 설치·관리) 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 8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(증축·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는 경우와 1일 물 사용량이 4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·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.

<삭제>

④ (현행과 같음)

제4조(물 재이용 정책에 관한 심의·자문) -----
----- 대해 「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」 제21조에 따른 -----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중수도의 설치·관리) ① 시장은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신축(증축·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조에서는 같다)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중수도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
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7호가목에 따른 도매시장
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

②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수도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(변경)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4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,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연구소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도서관

② 시장은 법 제9조 및 제1항에 따른 중수도 설치·운영 대상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하는 자에게 중수도 설치·운영을 권장하여야 한다.

1.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5에 따른 숙박시설

2.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

3.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

4.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

5.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

인 시설물로서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

6.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

7.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

8.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

9.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8호다목에 따른 물류터미널

10.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4호가목에 따른 방송국,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전신전화국

③ 중수도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(변경)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〈신 설〉

③ (생략)

<신설>

제8조(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) ① 「하수도법」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에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.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(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1. ~ 8. (생략)

②、③ (생략)

④ 시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

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
제7조의2(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에 따른 재이용)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, 건축 인가·허가 등 협의 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.

1. 법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시설물을 신축하는 경우

2. 법 제9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건축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

제8조(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) ① -----

----- 불일 -----

1. ~ 8. (현행과 같음)

②、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인가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
⑤ (생략)

제12조(급수구역)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하·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공급지역은 서울시의 관할구역으로 한다.

② (생략)

제14조(급수설비 공사) 급수설비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2. (생략)

3. 수선공사: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

4. (생략)

제16조(공사의 시행)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. 다만,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다.

제17조(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) ① 공사비용은 당해 재처리수 사용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. 다만,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

----- 국토교통부 장관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급수구역) ① -----

----- 서울특별시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급수설비 공사) 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----- 파손-----

4.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공사의 시행) -----

-----.

----- 대행자-----

-----.

제17조(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) ① ----- 해당

-----.
----- 수리-----

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 공사의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.

②、③ (생략)

제18조(공사비의 산출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그 공사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수요자가 납부하여야 한다.

1.、2. (생략)

③ (생략)

제19조(공사비의 납부) ① ~ ③ (생략)

④ 제3항에 따라 정산환불금은 재처리수 사용자의 미납된 요금 및 다음 달의 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.

제20조(원인자부담금)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1. (생략)

2. 급수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급수공사와 급수시설의 유지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

-----.

②、③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공사비의 산출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공사
에 실제로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-----.

1.、2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공사비의 납부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따른 -----

-----.

제20조(원인자부담금) ①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 파손 -----

파손예방-----

② (생략)

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.

1. 2. (생략)

3. 급수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재처리수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

4. 도로복구비와 도로경비 방지비용

5. 6. (생략)

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급수시설의 수선과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.

1. 급수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 또는 사용할 수 없게 된 재처리수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

2. (생략)

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은 다음 각 호의 기준등을 적용한다.

1. 2. (생략)

3. 도로복구비는 「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조례」에 따라 산출한 도로굴착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
----- 상응 -----

4. ----- 도로결빙 -----

5. 6.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----- 수리와 -----
----- 파손 -----
----- 호 -----
를 -----.

1. ----- 파손 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 「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」 -----

복구단가 산정기준에 따른다.
다만, 재처리수 사업자가 직접 복구할 경우 직접복구비는 도로굴착업체와 계약한 도로굴착복구단가로 산정한 금액과 재료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.

4. (생략)

5. 출동작업 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감리원과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감리비와 차량비는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하며, 직원경비는 「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조례」에 따른 여비로 한다.

6. (생략)

⑥ 기타 원인자부담금의 징수, 징수방법, 이의신청은 「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」에 따른다. 이는 재처리수의 급수시설은 상수도시설기준에 의해 설치하여 수도 급수시설과 동일하기 때문이다(“급수공사=수도공사, 재처리시설=수도시설”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)

제21조(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)

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

-----.

-----.

4. (현행과 같음)

5. -----

「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조례」-----.

6. (현행과 같음)

⑥ 그 밖에 -----

-----.
이 경우 “수도공사”는 “급수공사”로 “수도시설”은 “재처리시설”로 본다.

제21조(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)

① -----

자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
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
책임으로 한다.

② (생략)

제25조(급수 중지와 폐전) ①、

② (생략)

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그 급수
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.

1. 2. (생략)

3. 재처리수를 용도에 부적합
하게 사용하거나 수질사고를
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

4. 5. (생략)

제26조(요금의 징수) ① (생략)

② 요금 부과에 있어서 사용일
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
일할 계산하여 부과하되, 사용
량의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와
구경별기본요금의 10원 미만은
절사한다.

제27조(하·폐수처리수 재처리
수의 요금 산정) ① 하·폐수처
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은 시행규
칙 제19조에 따라 재처리수의
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
는 수준에서 결정하되, 사용량

대해서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5조(급수 중지와 폐전) ①、

② (현행과 같음)

③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

일으킬

4. 5. (현행과 같음)

제26조(요금의 징수) ① (현행과
같음)

②

구경별 기본요금

버림한다.

제27조(하·폐수처리수 재처리
수의 요금 산정) ①

요금은
법

에 따라 산정한다.

② 이용확대 등 필요한 경우 시장이 따로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.

제29조(계량기의 시험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「계량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급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, 추징 또는 다음 달분 요금에서 정산한다.

제30조(납기와 징수방법) ① (생략)

② 요금은 격월고지, 격월징수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급수의 중지, 급수설비의 폐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제31조(납부고지)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로 고지하되, 재처리수 사용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고지(이메일) 및 휴대폰 등을 통하여 고지할 수 있다.

② 전월분 미납액은 그 달분 고

-----.

② ----- 경우에 는 -----
-----.

제29조(계량기의 시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사용오차 -----
----- 해당 월의 급수량을 바로 고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해당 월의 -----
----- 추가징수 -----
-----.

제30조(납기와 징수방법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.

----- 납부기한을 -----
-----.

제31조(납부고지) ① -----

----- 전자고지(전자 우편) 및 휴대전화 -----.

② ----- 해당 월의 -----

지서에 미수액을 명시하여 미납
수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33조(체납관리) ① 하·폐수처
리수 재처리수 사용자 등이 요
금을 납부 기한을 경과하여 납
부하는 경우에는 납기일 다음날
부터 1개월까지 일할 계산한
연체금을 부담해야 하며, 연체
금은 다음번 납기요금에 추가하
여 청구할 수 있다. 연체금 =
미납요금×(3/100)×(체납일수
/월력일수)

② (생략)

③ 체납금과 연체금을 기한 내
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
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
징수 및 징수처분을 할 수 있
다. 다만, 사용자와 소유자가
다른 경우에는 처분 전에 소유
자에게 체납사실을 통지하여야
한다.

제35조(소멸시효) 요금(연체금
포함)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
효는 「민법」 제163조에 따
라 3년으로 한다. 다만, 요금과
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
「지방재정법」 제82조에 따라
5년으로 한다.

-----.

제33조(체납관리) ① -----

요금 납부기한-----

----- 연체금
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
되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기한까
지-----

-----.

제35조(소멸시효) -----

----- 대해서-----

-----.

제37조(하·폐수처리수 재처리 수의 사용자 등의 신고의무) ①

하·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사용자, 손괴자, 원인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신고기간 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- 1.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
- 2. ~ 5. (생략)
- ②, ③ (생략)

제38조(하·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계량기의 훼손 또는 망실 등에 대한 책임) ①

하·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재처리수 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. 다만, 자연재해로 계량기가 파손된 경우에는 설치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- ② (생략)

제39조(정수처분) ①

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(이하 “정수처분”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제37조(하·폐수처리수 재처리 수의 사용자 등의 급수 변경·누수 등 신고) ①

파손자-----

- 1. ----- 시
작하거나 -----
- 2. ~ 5. (현행과 같음)
- ②, ③ (현행과 같음)

제38조(하·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계량기의 훼손 또는 잃어버림 등에 대한 책임) ①

잃어버렸-----

- ② (현행과 같음)

제39조(정수처분) ①

자에게-----

1. ~ 8. (생략)

②、③ (생략)

제40조(과태료) ① 시장은 사기 등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 또는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.

②、③ (생략)

제43조(연구·개발 촉진 등) ① (생략)

②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45조(재정지원 비용의 반환)

① 시장은 제44조에 의해 설치비를 지원받은 자가 「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」 제21조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.

1.、2. (생략)

3.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것

1. ~ 8. (현행과 같음)

②、③ (현행과 같음)

제40조(과태료) ① -----

----- 추가징수 -----

②、③ (현행과 같음)

제43조(연구·개발 촉진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시장은 물 재이용시설-----

제45조(재정지원 비용의 반환)

① -----

1.、2. (현행과 같음)

3. 법 시행규칙 -----

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·관리
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준
수 이행명령을 하였으나 이를
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
4. (생략)

② (생략)

4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